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제정	1987.	5. 15.	훈령	제151호
개정	1989.	4. 29.	훈령	제164호
개정	1989.	8. 31.	훈령	제176호
개정	1990.	9. 3.	훈령	제193호
개정	1992.	12. 9.	훈령	제213호
전면개정	1994.	3. 16.	훈령	제236호
개정	1999.	2. 27.	훈령	제351호
개정	2008.	12. 23.	훈령	제510호
전부개정	2010.	11. 26.	훈령	제557호
일부개정	2015.	5. 11.	훈령	제63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12. 18.	훈령	제643호(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6.	10. 20.	훈령	제661호
일부개정	2018.	4. 4.	훈령	제681호(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9.	6. 10.	훈령	제697호
일부개정	2021.	6. 18.	훈령	제724호
일부개정	2023.	5. 22.	훈령	제742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훈령 일괄개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시립예술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직무) 시립예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의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안양시 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지) ①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외부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1. 정부행사에 수반된 공연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② 단원은 외부공연에 출연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부공연 출연신청서를 출연 7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제2장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5. 11>

② 단장은 해당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의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③ 출연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연 때마다 단장이 정한다.

④ 단장은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 공연 종료 후 다음 날을 휴무로 할 수 있다.

⑤ 단원의 복무감독은 시립예술단 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제3장 휴가

제8조(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 5. 11>

제9조(연가) ① 단원은 공연 또는 연습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별로 1회에 5일의 범위에서 자체 공연 또는 단장의 공연 요청이 없는 기간을 정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원에게 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근속연수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근속기간 구분 중 그 다음 근속기간의 연가일수를 별표 2-2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8.>

제10조(병가)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병가 신청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가)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제12조(특별휴가) ① 임신 중인 여자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성단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②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 한 단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9. 6. 10., 개정 2021. 6. 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1회에 사용)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가능)

④ 자녀가 있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6. 10., 개정 2021. 6. 1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단원은 자녀가 입영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6. 18.>

제12조의2(육아휴직) ① 단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10.]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한다.

제4장 해외연수 및 해외여행

제14조(해외연수)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해외 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1.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단장에게 추천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

제15조(해외여행) 단장은 단원이 개인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무급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평정

제16조(평정의 종류)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평정은 근무상황·성실도·기여도를 평정하고, 실기평정은 실기도·연습도를 평정한다. <개정 2015. 5. 11>

③ 실기평정 대상 단원은 근무평정 20점·실기평정 80점으로 하여 평정하고, 실기평정을 하지 않는 단원의 근무평정은 근무상황 20점·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80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5. 5. 11>

제17조 삭제 <2016. 10. 20.>

제18조(평정 제외자 및 불참자 처리) ① 예술단의 실기평정 제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1, 2016. 10. 20.>

1. 합창단: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작·편곡단원, 악보단원, 기획단원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②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기평정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해당 파트별 평균점수의 90퍼센트를 평정점수로 한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전년도 실기평정 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제19조(전형위원)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실기평정 전형위원은 평정시기 3일 전까지 위촉한다. <개정 2016. 10. 20.>

제20조(평정등급) 단원의 평정등급은 3·4·5·6·7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평정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 10. 20., 2021. 6. 18.>

제21조(평정결과 반영) ① 단장은 제20조의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5. 5. 11, 2016. 10. 20., 2019. 6. 10., 2021. 6. 18.>

1. 평정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단원은 수석 및 차석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평정등급 “7등급”이 연속 3회인 경우에 해당하는 단원은 다음달부터 3개월

간 1호봉을 감하여 지급한다.

3. 삭제 <2019. 6. 10.>

4. 삭제 <2019. 6. 10.>

② 평정결과 개인별 점수를 기준으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능수당의 등급을 차등 조정한다. 다만, 신규로 위촉하는 단원에 대한 예능수당의 등급은 6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③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전형으로 위촉된 신규단원에 대하여는 예능수당 지급기준을 단장이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제6장 상벌

제22조(상훈) ①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시립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1년간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도지사 이상의 표창: 1점
2. 시장,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장의 표창: 0.5점
3. 문화예술단체장의 표창: 0.3점

제23조(징계사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1. 조례·규칙 및 이 규정이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6.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제2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촉·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벌의 양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5. 11, 2021. 6. 18.>

제25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5. 5. 11>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승급을 보류한다.

③ 징계에 따라 해촉된 단원은 해촉된 날부터 3년 동안 단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5. 11, 2021. 6. 18.>

제2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10. 20.>

③ 위원장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시립예술단 업무 담당 과장, 감사업무 부서장, 합창단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로 하고, 간사는 시립예술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 10. 20.>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1, 2016. 10. 20.>

⑤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1>

제27조(징계의 절차) 단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처분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단원증) ① 단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시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② 단원은 단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해촉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1. 6. 18.>

제29조(인사기록표)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표

를 작성·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원의 수칙 및 시립예술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2010. 11. 26. 훈령 제557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1. 훈령 제6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훈령 제643호 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0. 훈령 제66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훈령 제681호, 안양시 훈령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0. 훈령 제6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8. 훈령 제7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2. 훈령 제74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훈령 일괄개정규정>

이 훈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 10. 20.>

단원의 직무(제2조 관련)

구분	직무
지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운영 및 음악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 연간 예술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부지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들의 연습 및 공연을 지도한다.
단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의 복무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 예술단 대·내외 공연, 행사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반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 행사 및 연습에 필요한 반주를 책임진다. ○ 피아노 관리를 책임진다.
부반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 행사 및 연습 시 반주자를 보조한다. ○ 반주자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안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 행사 및 연습에 필요한 안무를 지도한다. ○ 안무 연출에 필요한 소품, 의상 등을 관리한다.
단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주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 단무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수석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단원을 관리한다. ○ 연주 및 연습 시 파트단원을 이끌며 단원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차석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석단원을 보좌한다. ○ 파트관리,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의 관리를 보조한다.
악보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 악기 등을 관리한다. ○ 단무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기획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무장을 보좌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 행사일정관리, 기획, 홍보 등의 사무를 보조한다. ○ 합창단 물품을 관리한다.
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연습 및 연주활동에 전념한다. ○ 악기, 악보, 소품, 의상 등을 관리한다.

[별표 2]

근속연수별 연가일수(제9조제1항 관련)

근속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별표 2-2] <신설 2021. 6. 18.>

근속연수별 연가당겨쓰기 일수

(제9조제3항 관련)

근속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별표 3] <개정 2021. 6. 18.>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별표 4] <개정 2021. 6. 18.>

평정등급표(제20조 관련)

등급	평정결과	비고
3등급	평정대상의 10%	
4등급	평정대상의 20%	
5등급	평정대상의 62%	
6등급	평정대상의 5%	
7등급	평정대상의 3%	

[별표 5] <개정 2015. 5. 11.>

징계처벌의 양정기준(제24조 관련)

비위내용 비위유형	비위내용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도가 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1. 근무태만	위촉 해제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위촉 해제	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위반	위촉 해제	감봉	견책
4. 품위유지 의무위반	위촉 해제	감봉	견책
5. 집단행위 금지위반	위촉 해제	위촉 해제	감봉
6. 선동 및 단체파괴 금지위반	위촉 해제	위촉 해제	감봉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0. 20.>

서 약

서 약 서

본인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안양시 및 안양시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겠으며, 단장 및 지휘자가 지시하는 연습이나 공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 공연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단원의 화합을 위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단장의 승인 없이 안양시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에 출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 시립예술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18.>

단원평정표(제20조 관련)

확인자: 시립예술단장 (인)

작성자: 업무담당과장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평정(20점)			실기평정(80점)			총점	비고
			출결 (10점)	성실성 (10점)	소계	실기 (70점)	연습도 (10점)	소계		

1. 연주단원 근무평정표

확인자: 업무담당과장 (인) 평정자: 지휘자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상황(10점)						성실성(10점)				총계	비고		
			1월			~	12월			소계	조직 생활 (5)	규정 준수 (3)			기여도 (2)	소계
			결근	지각 조퇴	이석		결근	지각 조퇴	이석							

- ※ 결근: -1.5(무단 결근: -2), 지각, 조퇴: -0.5(1시간 이상 지각: -1), 무단이석: -1
- ※ 기여도: 근무 1년당 0.25점 + 예술발전 기여 등
- ※ 지각(1시간 이상 지각포함), 조퇴의 경우 2회 누적 시 연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지각 및 조퇴의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연주단원 실기평정표

확인자: 업무담당과장 (인) 평정자: 지휘자 (인)

성명	직위	분야	실기도 (70점)	연습도(10점)			총계	비고
				공연 (5점)	연습 (5점)	소계		

3. 비연주단원 근무평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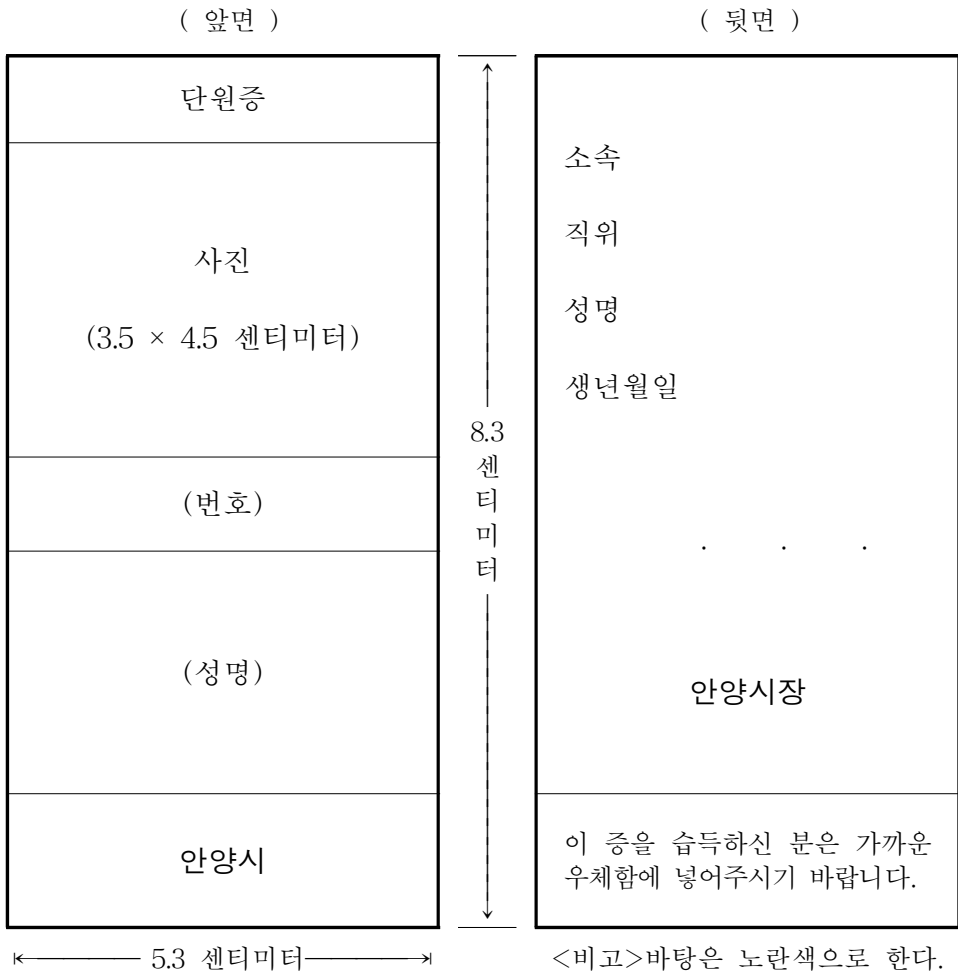
확인자: 업무담당과장 (인) 평정자: 지휘자 (인)

성명	직위	분야	근무상황(20점)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80점)						총계	비고			
			1월			~	12월			소계	업무 실적 (20)	창의력 노력도 (20)	직무 태도 (20)	규정 준수 (13)			정보화 능력 (15)	기여도 (2)	소계
			결근	지각 조퇴	이석		결근	지각 조퇴	이석										

- ※ 결근: -1.5(무단 결근: -2), 지각, 조퇴: -0.5(1시간 이상 지각: -1), 무단이석: -1
- ※ 기여도: 근무 1년당 0.25점 + 예술발전 기여 등
- ※ 지각(1시간 이상 지각포함), 조퇴의 경우 2회 누적 시 연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지각 및 조퇴의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0. 20.>

단원증 서식(제2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0. 20.>

단원 인사기록표

예술단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및 관계						
		(한글) (한자) (영문)									
성명	병역관계	미필			병역필						
		역종	신체 등위	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 일자	전역 일자
사진 (여권용) 3.5cm×4.5cm	개인 신상 관계	신체 사항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종교	취미	특기	
					좌() 우()						
		재산 사항	동산	부동산	가옥	부업명	부업월수	재산총액			
		정당 사회 단체	단체명	직위	가입일	탈퇴일	단체명	직위	가입 연월일	탈퇴 연월일	
가족 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	
학력	기간	학교명	학위	기간	학교명	학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	기간	학교명	학위	기간	학교명	학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임 명 사 항	연월일	직책	임명구분	임명처	연월일	직책	임명구분	임명처			

승급기록													
호봉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위 축 연월일													
기록자인													
호봉	10	9	8	7	6	5	4	3	2	1	정		
위축 연월일													
기록자인													
호봉확정근거													
경력연수	직책	근무기관	문서번호 및 날자	조회 연월일	회신문서 번호및일자	총경력	기관명						
구분	사정연월일	사정경력연수	사정호봉	잔여기간	작성자날인								
1차													
2차													
3차													
기록사항확인란													
본인							시립예술단장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직위: 성명: (인)							본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안양시 시립예술단장 (직인)						

